투자위험등급 1등급(매우 높은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브이아이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1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펀드의 위험 등급은 운용 실적,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투 자 설 명 서

이 투자설명서는 **브이아이 인덱스 플러스 증권 자투자신탁 1호[주식-파생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브이아이 인덱스 플러스 증권 자투자신탁 1호[주식-파생형]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매입하기 전에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명 칭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브이아이 인덱스 플러스 증권 자투자신탁 1호[주식-파생형]	**61697**

2. 집합투자업자 : 브이아이자산운용㈜

3. 판매회사 : 각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viamc.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작성 기준일 : 2026년 11월 01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26년 11월 13일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10조좌)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www.viamc.kr), 각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투자신탁은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서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기재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요 약 정 보 **5**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0**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3. 모집예정금액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5. 인수에 관한 사항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1**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4. 집합투자업자
5. 운용인력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위험 및 수익구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38**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45**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신탁업자)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50**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참고] 펀드용어의 정리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투자자는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원본손실위험 등 이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

상품으로「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8.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9. 이 집합투자기구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정한 별도의 자격요건이 있는 자[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를 판매하기 위한 파생상품펀드투자상담사(또는 펀드투자상담사) 자격을 갖춘 자]만이 투자 권유를 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의 관할 국가가 대한민국 이외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 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투자자의 국적 국가 또는 세법상의 과세 관할 국가)의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의 과세 관할 국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좌 개설 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요 약 정 보 >　　작성기준일 : 2026.11.01.

브이아이 인덱스 플러스 증권 자투자신탁 1호[주식-파생형]　　[펀드코드 : 61697]

투자 위험 등급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브이아이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1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국내주식 및 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는 모투자신탁에 100% 이하 투자하는 상품으로 가격 변동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원본손실위험, 추적오차위험, 파생상품 투자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요약정보는 **브이아이 인덱스 플러스 증권 자투자신탁 1호[주식-파생형]**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모자형 구조의 자투자신탁으로서 주식 및 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 합니다.

2. 투자전략

가. 기본 운용전략

이 투자신탁은 KOSPI200 지수의 투자성과를 추종하여 +α의 수익을 추구하는 '브이아이 투게더 인덱스 증권 모투자신탁[주식-파생형]'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이하로 투자하여 자본차익을 추구하는 것으로서 비교지수 대비 초과수익을 추구하는 증권집합투자기구(주식파생형)입니다.

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등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전략	투자비중
브이아이 투게더 인덱스 증권 모투자신탁 [주식-파생형]	- 주식 및 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에 60% 이상 투자하여 KOSPI 200 지수의 투자성과를 추종하여 +α의 수익을 추구 - 주식 및 주식관련파생상품에의 투자로 인한 위험평가액은 투자신탁재산의 10% 이상으로 투자하며, KOSPI200 지수의 움직임을 최대한 복제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성 - 주식 한도 내에서 선물이나 현물 중 저평가된 상품에 투자하여 무위험차익을 노리는 매도차익 거래 실시	100% 이하

분류

투자신탁, 증권(주식파생형), 추가형(추가납입가능),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종류형, 모자형

투자

종류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

비용	(클래스)	총보수 및 비용(단위:%)					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 (단위:천원)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0.86	0.2400	55	80	107	165	335
	수수료미징구				1.34	0.4400	45	92	142	247	555

- 오프라인(C) -										

주1)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보수·비용(판매수수료+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

주2) **종류 A(수수료선취-오프라인)와 종류 C(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보수·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3)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34페이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주5) 해당 집합투자기구는 선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클래스 및 오프라인 클래스에 비해 일반적으로 투자비용이 저렴한 온라인 클래스가 설정되지 않았습니다.

투자실적 추이 (연평균)

- 종류 -	- 최초설정일 -	- 최근 1년 -	- 최근 2년 -	- 최근 3년 -	- 최근 5년 -	- 설정일 이후 -
		25.11.02	24.11.02	23.11.02	21.11.02	06.11.01

수익률)

		~ 26.11.01	~ 26.11.01	~ 26.11.01	~ 26.11.01	~ 26.11.01
- 수수료미징구 - 오프라인(A)(%) -	- 2006.11.01 -	57.70	66.50	45.42	20.76	9.78
- 비교지수(%) -		55.28	63.28	42.64	18.20	8.47
- 수익률 변동성(%) -		46.51	35.62	30.72	25.91	21.80

주1) 비교지수 : KOSPI200 100% (비교지수 성과에는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음)

주2)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집합투자기구 총비용 지급후 해당기간동안의 세전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3)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 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운용전문인력

(2026.11.01현재)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국내주식파생형)				비고
				운용규모	운용역		운용사		
김정민	1979	책임(팀장)	11개	733억원	65.24	-	65.24	85.16	

민지호	2002	부책임(사원)	6개	119억원	-	-			

주1)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 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하며, 1년 미만의 수익률은 제외됩니다.

주4)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주5)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 수 및 규모를 산정할 때 모자형구조의 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합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추가적인 투자자 유의사항은 투자설명서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투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자 위 험	**원본손실 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원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재산 가치변동에 따라 투자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 손실의 위험이 있으며, 투자원금의 손실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합니다.
	추적오차위험	이 투자신탁은 대형우량주 중심으로 구성된 KOSPI200 지수의 성과에 최대한 근접한 수익률을 추구하기 위해 KOSPI200 지수의 움직임을 최대한 복제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운용합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수익률이 비교지수 수익률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률과 비교지수 수익률이 동일할 것으로 여기시는 투자자는 추적오차로 인하여 예상치 못하게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유 등 현실적 제약으로 본래의 투자목적인 비교지수 변동률 추적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 투자신탁 운용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의 지출(신탁보수, 매매수수료, 자산보관비용 등) - 설정/해지 금액의 유출입 시점과 펀드매니저가 투자를 실행하는 시점이 일치하지 않음에 따른 괴리 - 특히, 운용규모가 소규모일 때 이러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운용초기에 괴리율이 커질 수 있음
	주식가격 하락위험	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에 투자합니다. 이로 인하여 이 투자신탁은 주식의 가격하락 위험에 노출되며, 주식가격은 투자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하게 하락할 수 있고, 이에 따른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에 투자할 수 있으며, 파생상품의 특성으로 인한 레버리지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의 운용전략에 따라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헤지 목적으로 파생상품에 투자할 경우 시장내의 수급과 시장 외부변수에 따라 파생상품의 가격 움직임이 기초자산의 움직임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상치 못한 손실로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옵션에 투자할 경우, 옵션매도에 따른 이론적인 손실범위는 무한대 이므로 기초자산에 대한 투자나 옵션매수의 경우에 비하여 더 높은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운용전략에 따라 파생상품의 계약 만기시 동 계약을 차근월물 등으로 이전(roll over)하여 파생상품 운용을 지속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기존 계약과 차근월물 간의 가격차이 등으로 인해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자율 변동 위험	이 투자신탁은 채권에 투자할 수 있으며 채권은 미래 이자율 변동에 따라 가격변동위험과 쿠폰의 재투자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영향을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이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권가격 하락에 의한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장기의상환 만기를 가진 채권은 단기의 상환만기를 가진 채권에 비하여 시장금리변동에 따른 가치의 변동이 크게 나타납니다. 투자신탁의 운용전략에 따라, 투자신탁 대부분이 상환되는 시기 이후에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을 보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권의 중도매도에 따른 자본손실로 인해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기구 해지 위험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 경과시점에서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이거나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투자위험은 투자설명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중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 입	- **15시30분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2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 **15시30분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 **15시30분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2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4영업일(D+3)**에 관련 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 **15시30분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방법			기준가격을 적용. **제4영업일(D+3)**에 관련 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환매수수료	없음		

기준가격	산정방법	- 당일 기준가격 = (전일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 부채총액) /전일 집합투자기구 총 좌수 -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공시장소	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 (www.viamc.kr)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dis.kofia.or.kr)에 게시합니다.

과세	구분	*과세의 주요내용*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table>
<tr><td></td><td>
<table>
<tr><td>구</td><td></td></tr>
<tr><td>수익자</td><td>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td></tr>
</table>
※ 세제혜택 및 과세에 대한 세부사항은 '투자설명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중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td></tr>
<tr><td>전환절차 및 방법</td><td>해당사항 없음</td></tr>
<tr><td>집합투자업자</td><td>브이아이자산운용㈜ (대표번호: 02-727-2700 / 인터넷 홈페이지 : www.viamc.kr)</td></tr>
<tr><td>모집기간</td><td>추가형으로 계속 모집 가능</td><td>모집·매출 총액</td><td>투자신탁의 수익증권
(10조좌)</td></tr>
</table>

효력발생일	2026년 11월 13일	존속기간	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 없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www.viamc.kr),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 참고		
참조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45페이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 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수수료	수수료선취	A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 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보수·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1년 6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 보다 높은 총보수·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미징구	C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 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보수·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1년 6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 보다 낮은 총보수·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판매경로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viamc.kr)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viamc.kr)
- 수시공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viamc.kr)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 칭	브이아이 인덱스 플러스 증권 자투자신탁 1호[주식-파생형] (펀드코드 : 61697)	
(종류) 클래스	A	C
	수수료선취-오프라인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금융투자협회펀드코드	61851	61698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주식파생형)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추가형(추가로 자금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마. 특수형태 : 종류형(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투자신탁)
모자형(모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구조의 투자신탁)

바.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 X(비해당)

주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 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 "투자대상"과 "투자전략"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2) 용어에 관한 사항은「펀드용어의 정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 10조좌

이 투자신탁은 10조좌까지 모집 가능하며, 1좌(1좌당 1원, 최초설정시) 단위로 모집합니다. 모집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주1) 모집(판매) 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 되거나 해지 될 수 있습니다.

주2) 모집(판매) 예정금액 또는 예정기간이 줄어들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가. 모집기간 : 추가형으로 모집기간이 별도로 정해지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나. 모집장소 : 각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viamc.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모집절차 및 방법 : 판매회사 영업일에 판매회사 창구를 통하여 모집합니다.

주1)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의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 칭	브이아이 인덱스 플러스 증권 자투자신탁 1호[주식-파생형] (펀드코드 : 61697)	
(종류) 클래스	A	C
	수수료선취-오프라인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금융투자협회펀드코드	61851	61698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변경시행일	변경 사항
2006-11-01	최초설정
2008-05-06	약관변경 (주식선물 추가)
2008-09-18	자산운용사 상호변경(CJ자산운용㈜ → 하이자산운용㈜)
2008-10-06	투자신탁명 변경 (CJ 인덱스 플러스 파생상품1호 → 하이 인덱스 플러스 파생상품1호)
2009-03-04	약관변경(투자한도 국내주식 60% 이상 추가)
2009-05-01	약관변경(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적용으로 변경) 투자신탁명 변경(하이 인덱스 플러스 파생상품1호 → 하이 인덱스 플러스 증권 투자신탁 1호[주식-파생형])
2010-05-03	신탁계약 변경(종류 B의 판매회사보수율 인하 및 소득세법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2011-12-05	신탁계약 변경(투자신탁의 해지 및 수시공시에 관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2012-11-29	신탁계약 변경 - 수시공시에 관한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 - 보고서 교부 방법 및 수익자총회의 면제사유에 관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2013-01-18	신탁계약 변경(적립식 가입에 따른 세제 혜택적용 삭제(단서삭제))
2013-03-14	책임투자운용인력 변경(박재성→남흥용)
2013-07-22	- 신탁계약 변경(투자제한 예외에 관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 - 투자운용인력 변경(남흥용→박재성)
2013-11-25	신탁계약 변경(수익자총회 등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2014-09-15	· 신탁계약 변경(모자형 집합투자기구로 변경) - 펀드명 변경(하이 인덱스 플러스 증권 투자신탁 1호[주식-파생형] → **하이 인덱스 플러스 증권 자투자신탁 1호[주식-파생형]**) - 모투자신탁 추가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다른자투자신탁 추가

2014-11-27	신탁계약 변경 - 모투자신탁(하이 인덱스 플러스 증권 모투자신탁[주식-파생형]) 해지에 따른 삭제
2015-01-22	- 신탁계약 변경(투자신탁의 해지에 관한 법 개정사항 반영)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다른 자투자신탁 내역 추가
2015-10-19	책임투자운용인력 변경(박재성→변재일) 신탁계약 변경(신탁업자 명칭 변경 : 하나은행과 한국외환은행의 합병)
2015-11-23	신탁계약 변경 - 환매수수료 삭제 - 금전차입 등의 제한에 관한 법 개정사항 반영
2016-07-02	- 투자위험 등급 분류 체계 개편(5단계 체계 → 6단계 체계) - 위험등급 변경 : 1등급(매우 높은 위험) → 3등급(다소 높은 위험)
2016-07-18	신탁계약 변경(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투자신탁재산의 매매 및 평가이익 유보)
2016-07-30	신탁계약 변경(증권시장 거래시간 연장에 따른 변경)
2016-10-04	- 신탁계약 변경(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공시 및 보고서) - 모투자신탁의 운용 및 투자제한에 관한 사항 변경
2016-11-14	책임투자운용인력 변경(변재일→ 배광웅)
2019-09-16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및 종류(클래스) 한글명칭 부여 반영 신탁계약 변경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반영
2019-11-14	신탁계약 변경 :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의무해지 등)
2020-01-17	신탁계약 변경 - 집합투자업자명 변경 : 하이자산운용㈜ → 브이아이자산운용㈜ - 투자신탁명 변경 : 하이 인덱스 플러스 증권 자투자신탁 1호[주식-파생형] → 브이아이 인덱스 플러스 증권 자투자신탁 1호[주식-파생형]
2020-11-18	- 신탁계약 변경 :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신탁계약서 기재사항 등) - 투자위험등급 변경 : 3 등급(다소 높은 위험) → 2 등급(높은 위험)
2022-05-20	신탁계약 변경 - 투자신탁보수율 및 선취판매수수료율 인하 - 수익증권 명칭 변경 : 종류 B 수익증권 → 종류 C 수익증권 -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운용행위 감시의무, 용어정리 등)
2023-09-26	- 운용전문인력 변경 : (책임)배광웅 → (책임)정원욱, (부책임)김승민 - 신탁계약 변경 : 투자대상자산 추가(환매조건부매수)
2024-06-20	운용전문인력 변경 : (부책임)김승민 → (부책임)임성철
2025-01-09	운용전문인력 변경 : (책임) 정원욱 → (책임) 김정민
2026-04-24	운용전문인력 변경 : (부책임)임성철 → (부책임)민지호
2026-11-13	투자위험등급 변경 : 2 등급(높은 위험) → 1 등급(매우 높은 위험)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자금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

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주1) 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지(해산) 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해산)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 집합투자기구의 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회사명	브이아이자산운용㈜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서울국제금융센터 Three IFC 16층) 02-727-2700

주1)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성명	생년	직위	운용경력년수 (2026.11.01 현재)	이 력
김정민	1979	책임운용역 (팀장)	15년 6개월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KAIST Finance-MBA 서울 HSBC은행 업무혁신부(`03.03~`06.01) 교보악사자산운용 AI팀/인덱스 퀀트운용팀 (`08.03~`14.11) 에셋플러스자산운용 BMR Center(`14.12~`16.11) J&J 자산운용 국내운용2팀(`16.11~`17.03) BNK자산운용 주식운용1팀(`17.09~`18.03) 교보악사자산운용 인덱스1팀(`18.03~`24.03) 우리자산운용 ETF/인덱스운용실(`24.04~`25.01) 현 브이아이자산운용 Equity그룹(`25.01~현재)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해당사항 없음
민지호	2002	부책임운용역 (사원)	6개월	경희대학교 호텔경영학과 현 브이아이자산운용 Equity그룹(`24.09~현재)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해당사항 없음

나.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026.11.01 현재)

성명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국내주식파생형)			
	집합투자기구 수	운용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1년	최근 2년
김정민	11 개	733억원	65.24	-	65.24	85.16
민지호	6 개	119억원	-	-		

주1)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하며, 1년 미만의 수익률은 제외됩니다.

주4)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주5)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 수 및 규모를 산정할 때 모자형구조의 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합니다.

다.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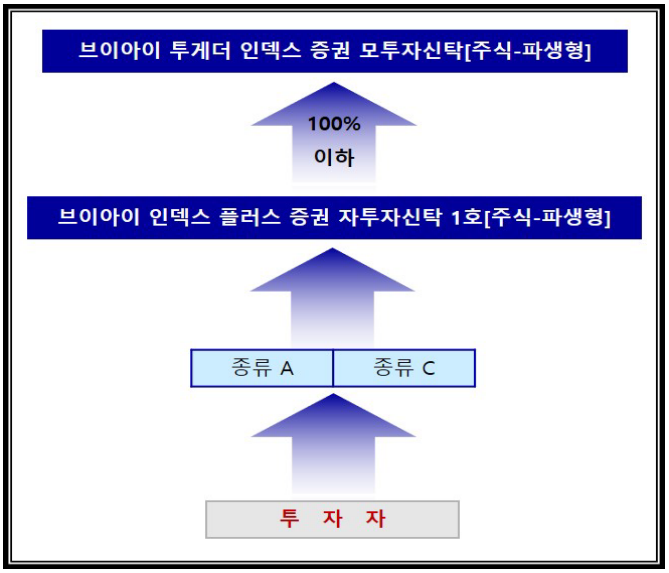
운용전문인력		운용 기간
책임	부책임	
한 종 덕	-	2006-11-01 ~ 2007-03-31
이 성 민	-	2007-04-01 ~ 2008-09-15
박 재 성	-	2008-09-16 ~ 2013-03-13
남 흥 용	-	2013-03-14 ~ 2013-07-21
박 재 성	-	2013-07-22 ~ 2015-10-18
변 재 일	-	2015-10-19 ~ 2016-11-13
배 광 웅	-	2016-11-14 ~ 2023-09-25
정 원 욱	김 승 민	2023-09-26 ~ 2024-06-19
정 원 욱	임 성 철	2024-06-20 ~ 2025-01-08
김 정 민	임 성 철	2025-01-09 ~ 2026-04-23
김 정 민	민 지 호	2026-04-24 ~ 현 재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 브이아이 투게더 인덱스 증권 모투자신탁[주식-파생형] : 이 투자신탁의 운용전문인력과 같음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투자신탁, 증권(주식파생형), 추가형, 개방형, 종류형, 모자형



나. 종류형 구조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투자신탁으로서 수수료, 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서로 다른 수종의 수익증권을 발행합니다. 하지만 종류의 수 및 구분에 관계 없이 이 집합투자기구는 단일의 집합투자기구로서 운용행위는 종류간의 차별 없이 통합하여 이루어 집니다.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본 집합투자기구의 각 종류별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수수료	수수료선취	A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 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1년 6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 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미징구	C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 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1년 6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 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판매경로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1) 종류별 가입자격

종류		가입자격
A	수수료선취-오프라인	선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C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제한없음

(2) 보수 및 수수료 차이

종류		수수료		보수(%)			
		판매	환매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신탁업자	사무관리회사
A	수수료선취-오프라인	납입금액의 0.3% 이내	-	0.025	0.2	0.01	0.005
C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		0.025	0.4	0.01	0.005

주1) 판매수수료(판매시 투자자로부터 받는 금전)는 매입시 일회적으로 부과합니다.

주2) 보수(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는 순자산총액의 연간 %를 기준으로 하며, 매3개월마다 지급합니다.

주3) 다른 종류간 전환은 할 수 없습니다.

주4) 보수 외의 기타비용, 증권거래비용 등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2부의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 모자형 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법제233조에 의거한 모자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모투자신탁명		주요 투자대상 및 전략
브이아이 투게더 인덱스 증권 모투자신탁 [주식-파생형] [등록신청서 제출일 : 2014.9.4]	투자목적	주식 및 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에 60% 이상 투자하여 KOSPI 200 지수의 투자성과를 추종하여 +α의 수익을 추구
	주요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주식 및 주식관련파생상품에의 투자로 인한 위험평가액은 투자신탁재산의 10% 이상으로 투자하며, KOSPI200 지수의 움직임을 최대한 복제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성 - 주식 한도 내에서 선물이나 현물 중 저평가된 상품에 투자하여 무위험차익을 노리는 매도차익 거래 실시
	비교지수	KOSPI 200 100%

주1) 이 투자신탁은 2014년 9월 15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4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모자형 집합투자기구로 변경되었습니다.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모자형 구조의 자투자신탁으로서 주식 및 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법 제233조의 규정에 의한 종류형 투자신탁으로서 수익자의 특성에 알맞게 기준가격이 다른 수종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 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투자대상의 종류/ 투자한도/투자대상의 조건)

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투자대상		투자한도	주요내용
①	모투자신탁 수익증권	100% 이하	브이아이 투게더 인덱스 증권 모투자신탁[주식-파생형]
②	단기대출	10% 이하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금융기관에의 예치		만기가 1년 이내인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에의 예치

	환매조건부매수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
다만, 수익자의 환매청구에 응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환매대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모투자신탁의 환매대금 지급일정의 차이로 인하여 그 비율이 일시적으로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법시행령 제268조제4항에 따른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다음의 경우에는 상기의 투자대상 ① 및 ②의 규정은 그 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운용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① 및 ②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법 제229조제1호의 투자비율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

※ 브이아이 투게더 인덱스 증권 모투자신탁[주식-파생형]

투자대상		투자한도	주요내용
①	주식	60%이상 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초과할 수 있음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제8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 증권예탁증권(법 제9조제15항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에 한한다)
②	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
③	어음등	40%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으로서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인 것과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④	집합투자증권등	40%이하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⑤	환매조건부매도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로서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⑥	증권대여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⑦	증권차입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

⑧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법시행령 제268조제4항에 따른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단기대출(법 제83조제4항의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금전의 대여)
2. 만기가 1년 이내인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에의 예치
3.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기 투자대상 ①부터 ③까지의 규정은 그 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운용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①부터 ③까지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대상자산의 신용평가등급이 상기에서 정하는 신용평가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에는 해당자산을 3개월 이내에 처분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부도 등으로 유예기간 3개월 이내에 해당자산의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증권대여 :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증권대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 수익률 증진 :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합니다.
  나. 기타 효율적, 안정적 운용을 위해 증권대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증권차입 : 효율적 운용, 보유 자산의 시장위험 헤지, 환매 대응, 유동성 확대,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증권차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나.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할 때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투자대상 종류	투자제한의 내용	예외
①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과 투자신탁재산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의 방법으로도 운용할 수 없다.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제한]

※ 브이아이 투게더 인덱스 증권 모투자신탁[주식-파생형]

투자대상 종류	투자제한의 내용	예외
①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과 투자신탁재산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의 방법으로도 운용할 수 없다.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	
② 동일종목의 증권에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며,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 예금, 그 밖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가. 국채증권,「한국은행법」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행위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의 것은 제외한다) 및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파생결합증권,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보호 등을 고려하여 법시행규칙 제10조의2에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행위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비중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비중까지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별로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한다. 라. 동일종목의 증권에 법 제234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행위	
③ 동일법인발행 지분증권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파생상품 투자	④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⑤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 증권을 포함한다)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 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⑥ 집합투자증권 투자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다)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함)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는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나.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함)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라.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시행령 제77조제4항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⑦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	법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법 제189조의 수익증권, 그 밖에 법시행령 제86조제2항에서 정하는 증권을 제외하며, 계열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한 증권예탁증권 및 법시행령 제86조제3항에서 정하는 투자 대상자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행위	

⑧ 후순위사채권	이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 사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등 법시행령 제8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상기의 투자제한 ②부터 ⑥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않으면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의 경우는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보며, 금융투자업규정 제4-5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상기의 투자제한 ⑦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운용합니다.

다. 기타 제한 사항

구 분		투자제한의 내용
①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제한**	가.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 행사에 필요한 경우 -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수익자의 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나. 집합투자업자는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 행사를 위해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 전자증권법에 따른 말소의 전자등록 - 판매회사를 통한 매도
②	**금전차입 등의 제한**	가.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 - 수익증권의 환매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환매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 -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수익자의 매수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매수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 - 그 밖에 투자신탁의 운용 및 결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금전의 차입이 필요하고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때로서 법시행령 제83조제2항으로 정하는 때 나. '가'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가'에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차입금 상환 전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시행령 제8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재산 중 금전을 대여(위 '가. 투자대상'의 '단기대출'을 제외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재산으로 이 투자신탁 외의 자를 위하여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이 투자신탁은 모자형 구조의 자투자신탁으로서 국내주식 및 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이하를 투자하여 비교지수 대비 초과수익을 추구하는 증권집합투자기구(주식형) 입니다.

※ 비교지수 : KOSPI 200 100%

주1) 비교지수 산출기관의 상황, 지수에 포함된 종목의 매매가능성 및 기타 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운용환경 등의 변화로 인해 비교지수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비교지수로서 적합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주요 투자대상과 관련된 다른 지수로 변경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변경될 경우 변경등록 후 수시공시 절차에 따라 한국금융투자협회 및 판매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됩니다.

주2) 비교지수 : KOSPI200 지수는 한국거래소가 시장대표성, 업종대표성, 유동성을 감안하여 대표적인 200종목을 토대로 산출한 지표입니다.

주3) 선정사유 : KOSPI200 지수는 유동성이 풍부한 소수 우량종목으로 구성되어 시장수익률(KOSPI)과 거의 유사한 움직임을 보이기에 비교지수로 선정하였습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 브이아이 투게더 인덱스 증권 모투자신탁[주식-파생형]

(1) 기본운용전략

이 투자신탁은 모자형 구조의 모투자신탁으로 대형우량주 중심으로 구성된 KOSPI200 지수의 성과에 최대한 근접한 수익률을 추구하기 위해 KOSPI200 지수의 움직임을 최대한 복제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며, 부가적으로 편입된 주식한도 내에서 선물이나 현물 중 저평가된 상품에 투자하여 무위험차익을 노리는 차익거래를 실시하여 +α의 수익을 추구하는 증권집합투자기구(주식파생형) 입니다.

(2) 상세운용전략

(가) KOSPI200 지수의 움직임을 최대한 복제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합니다.

(나) 포트폴리오 구성방법

① 종목스크린 : 시가총액 기준 상위 120~130종목을 우선 선정합니다.

② 업종별 재분류 :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작은 종목 중에서 신용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는 종목을 제외하고 동업종의 하위 시가총액종목을 편입합니다.

⇒ 최종 바스켓을 구성하는 100여개 종목을 확정하여 포트폴리오 구성합니다.

(다) 오차의 허용범위 : 구성된 포트폴리오와 KOSPI200 지수의 수익률이 3% 이상 오차가 날 경우 포트폴리오 조정 가능합니다.

(3) 추가수익 추구전략

(가) 차익거래를 통해 편입된 주식한도 내에서 현/선물 중 저평가된 상품에 투자하여 무위험차익을 추구

하는 전략을 선택적 활용할 예정입니다.

(나) 선물, 합성옵션을 사용하여 기존 편입된 포트폴리오의 베타를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익을 실현할 수 있는 전략을 선택적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 종목선정 프로세스



※ 비교지수 : KOSPI 200 100%

나.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주식 및 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브이아이 투게더 인덱스 증권 모투자신탁[주식-파생형]"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이하를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으로서, 투자한 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라 투자자의 수익률이 결정됩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법 제81조제1항제1호마목의 위험평가액을 말한다)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을 파생상품에 운용하는 경우에 위험에 관한 지표를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www.viamc.kr) 등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공시하여야 합니다.

위험에 관한 지표란 다음의 지표를 말합니다.

① 계약금액

②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만기시점의 손익구조

③ 시장상황의 변동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손익구조의 변동 또는 일정한 보유기간에 일정한 신뢰구간 범위에서 시장가격이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불리하게 변동될 경우에 파생상품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손실예상금액(VaR)

④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되는 지표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위험에 관한 지표

아래의 투자위험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위험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상품 가입**

시 반드시 인지해야 할 위험들을 상세히 기재하고 있으나, 아래의 내용이 이 집합투자기구에 의한 투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 일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원본손실 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원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재산 가치변동에 따라 투자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 손실의 위험이 있으며, 투자원금의 손실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합니다.
시장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에 투자하며, 모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을 주식, 채권, 어음등, 집합투자증권등, 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 등에 투자합니다. 따라서 국내금융시장의 주가, 이자율 및 기타 거시경제지표, 정치·경제상황, 정부의 정책 변화, 세제의 변경 등이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 등도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투자신탁은 주식 고편입 상품으로 주식 가격 하락(전체 주식시장의 변동 또는 개별기업의 실적 변화 등으로 인한 개별기업의 주가변동)에 의해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자율 변동 위험	이 투자신탁은 채권에 투자할 수 있으며 채권은 미래 이자율 변동에 따라 가격변동위험과 쿠폰의 재투자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영향을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의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권가격 하락에 의한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장기의 상환 만기를 가진 채권은 단기의 상환만기를 가진 채권에 비하여 시장금리변동에 따른 가치의 변동이 크게 나타납니다. 투자신탁의 운용전략에 따라, 투자신탁 대부분이 상환되는 시기 이후에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을 보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권의 중도매도에 따른 자본손실로 인해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은 일정 매기마다 수령하는 이자액(Coupon)을 다시 재투자 했을 때의 수익률 변동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채권의 가격은 중간에 수령하는 이자액을 현재의 채권시장 이자율과 동일하게 재투자한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채권시장 이자율은 지속적으로 변동하고 있으므로, 만약 지급받은 이자액을 재투자하는 시점에 시장이자율이 당초의 시장 이자율보다 낮아질 경우 채권 투자 수익이 예상수익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	이 투자신탁은 주식, 채권, 어음등의 거래에 있어서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경영상태 악화, 신용상태 악화 등의 원인으로 신용도 하락, 채무 불이행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원금과 이자에 대한 회수 기간의 장기화로 인한 투자신탁의 환매연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거래상대방 위험	보유하고 있는 증권 및 단기 금융상품을 발행한 회사 또는 계약상대방이 신용등급의 하락 또는 부도 등과 같은 신용사건에 노출되는 경우 그 증권, 단기금융상품, 당해 계약 등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에 따라 채무 등의 지급유예, 채무증권 등이 주식과 같은 지분증권 또는 다른 종류의 새로운 채무증권(계약) 등으로의 전환, 변제기간이 장기간 유예 되는 등의 방식으로 당초의 권리가 변경되어 투자원본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위험	증권의 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이 투자신탁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할 경우 투자대상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환금기간의 장기화로 인해 투자신탁의 적시 환매에 응할 수 없는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거래비용의 증가, 환매연기 등으로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 위험	이 투자신탁은 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에 투자할 수 있으며, 파생상품은 특성상 기초자산의 시장가격 변동보다 더 큰 손익을 가져오는 레버리지 효과(지렛대 효과)를 가집니다. 따라서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보다 더 크게 투자원금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며, 파생상품의 종류에 따라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원금을 초과하여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에 투자할 수 있으며, 파생상품의 특성으로 인한 레버리지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의 운용전략에 따라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헤지 목적으로 파생상품에 투자할 경우 시장내의 수급과 시장 외부변수에 따라 파생상품의 가격 움직임이 기초자산의 움직임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상치 못한 손실로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옵션에 투자할 경우, 옵션매도에 따른 이론적인 손실범위는 무한대 이므로 기초자산에 대한 투자나 옵션매수의 경우에 비하여 더 높은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운용전략에 따라 파생상품의 계약 만기시 동 계약을 차근월물 등으로 이전(roll over)하여 파생상품 운용을 지속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기존 계약과 차근월물 간의 가격차이 등으로 인해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모주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운용전략에 따라 공모주에 투자할 수 있으며, 공모주(새로이 기업공개가 되는 주식)는 기존의 주식보다 큰 가격변동성을 지녔으며, 한정된 물량 하에 시장 참여자들의 경쟁으로 유리한 가격에 그리고 충분한 물량을 취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유리한 가격과 더 많은 물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매도금지 규정(Lock-up)에 종속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추가적인 변동으로 인해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권대여 위험	이 투자신탁은 운용전략에 따라 투자재산을 증권 대여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개회사 및 거래상대방의 시스템 및 운영오류나 거래상대방의 파산으로 인해 자산의 회수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투자신탁의 투자자산 매매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의해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권차입 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재산을 증권 차입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입 자산을 매도하여 해당 자산의 반환 시점에 예상과 달리 그 자산의 가치가 급등하게 되면, 매도시점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수함으로 인해 그 차액(매도가-매수가) 만큼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매조건부채권 매도 및 운용에 대한 위험	이 투자신탁은 운용전략에 따라 투자재산을 환매조건부 매도로 운용할 수 있으며, 환매조건부채권(RP)이란 단기 금융상품의 일종으로 일정기간이 지난 후 채권을 다시 매수할 것을 원칙으로 현재 채권을 매도하는 거래계약 입니다. 따라서 이 상품은 단기간에 자금을 조달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에 레버리지 위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매조건부채권 매도에 의한 자금조달로 금융상품을 매입할 경우 자금의 조달과 운용에 대한 기간의 불일치, 금리 불일치 등 미래의 경제 상황에 따라 조달금리가 운용금리보다 높아져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기예금 및 RP매입 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재산을 정기예금, RP매입 등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이렇게 기간이 정해져 있는 유동성 자산의 경우 시장매각이 제한되고, 중도해지 시 약정이율의 축소 적용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투자자는 환매연기로 기회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기대출(콜론)및 예금잔액 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재산을 단기대출로 운용할 수 있으며, 단기대출을 받는 금융기관(은행, 증권, 보험, 카드 등)의 현금 부족 및 부도 등으로 인해 만기일에 자금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투자자는 환매연기에 따른 기회비용 발생과 함께 자금 미상환에 따른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신탁 내의 현금 중 자산에 투자되지 않는 잔액은 신탁회사에 예치하게 됩니다. 이 경우 신탁회사(은행, 한국증권금융 등)의 현금 부족 및 부도로 인해 당해 예금 잔액은 물론 이자수령 등의 차질로 인해 투자자는 환매연기로 인한 기회비용 발생과 함께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추적오차위험	이 투자신탁은 대형우량주 중심으로 구성된 KOSPI200 지수의 성과에 최대한 근접한 수익률을 추구하기 위해 KOSPI200 지수의 움직임을 최대한 복제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운용합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수익률이 비교지수 수익률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률과 비교지수 수익률이 동일할 것으로 여기시는 투자자는 추적오차로 인하여 예상치 못하게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유 등 현실적 제약으로 본래의 투자목적인 비교지수 변동률 추적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 투자신탁 운용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의 지출(신탁보수, 매매수수료, 자산보관비용 등) - 설정/해지 금액의 유출입 시점과 펀드매니저가 투자를 실행하는 시점이 일치하지 않음에 따른 괴리 - 특히, 운용규모가 소규모일 때 이러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운용초기에 괴리율이 커질 수 있음

주식가격 하락위험	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에 투자합니다. 이로 인하여 이 투자신탁은 주식의 가격하락 위험에 노출되며, 주식가격은 투자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하게 하락할 수 있고, 이에 따른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운용실적 위험	**과거 운용실적은 과거의 운용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환매대금 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은 환매청구일과 환매기준가격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기준가격 적용일까지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이로 인하여 실제 환매대금은 환매청구일의 예상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환매청구일의 평가액 대비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펀드규모위험	투자신탁의 설정초기 또는 환매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 규모가 일정규모 이하로 적어지는 경우에는 투자대상 자산의 편입 및 분산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일부 자산에 집중 투자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은 이 투자신탁의 성과 및 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 또는 제한위험	다음과 같은 경우 환매가 연기될 위험이 있습니다. 뚜렷한 거래부진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할 수 없거나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의 폐쇄·휴장 또는 거래정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하여 환매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시가가 없어서 환매청구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판매회사·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투자회사등이 해산 등으로 인하여 수익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경우 환매가 제한될 위험이 있습니다.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제2영업일전일(15시30분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제2영업일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와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환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기구 해지 위험	다음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3.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 경과시점에서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4.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설정원

	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상기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동의 없이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는 1개월 이내에 해지, 합병 및 모자형 전환, 존속 등 처리계획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대량환매 위험	이 투자신탁에 집중된 대량환매가 발생할 경우에는 환매자금을 우선적으로 조달해야 합니다. 이로 인하여 운용전략을 유지하거나 효과적으로 운용전략을 구사하는데 있어 일부 제약을 받을 수 있고, 이는 환매된 집합투자증권 및 잔존 집합투자증권의 가치에 손실을 초래하여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정가액 산정위험	시장가격이 없는 자산에 대하여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는 공정가액 산정방법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자산평가가 이루어 집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공정가액이 시장가치와 정확히 상응한다고 보장할 수 없고 정확한 가치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예상배당 위험	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에 대하여 배당락 기준으로 각 종목별 예상배당액을 추정하여 당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에 반영합니다. 이 때 예상 배당금액은 추후 주주총회에서 확정되는 실제 배당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확정된 실제 배당금액이 예상 배당금액 보다 적어질 경우 투자신탁의 가치하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권리행사 위험	이 투자신탁을 운용함에 있어서 보유증권에 대하여 재량권을 가지고 의결권이나 매수청구권 등 기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증대시키고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신의성실을 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리행사 결과가 집합투자재산의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거래중지 위험	이 투자신탁이 보유한 증권은 증권시장의 폐장, 휴장 또는 전산오류,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매매거래가 중지될 수 있고 합병, 분할 등과 같은 기업행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해당증권의 거래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해당 증권은 이 과정에서 평가가 중지되고 추후 거래가 재개되어 다시 평가가 이루어질 때까지 적절하게 가치를 반영시키지 못할 수 있으며 평가가 재개될 때 일시에 가격이 반영됨에 따라 수익률 변동이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준가격 산정오류 위험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일반사무관리회사, 채권평가회사, 판매회사 등 관련 기관의 잘못된 업무처리로 인하여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오류가 1000분의 2 미만인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가격 산정 오류가 이러한 오차범위 이내에서 발생한 경우 당해 투자신탁을 청약하거나 환매한 투자자, 기존투자자들 사이에 서로 다른 경제적 가치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법률, 조세 및 규제 등 제도적 위험	국내 법률, 조세 및 규제 등의 정책이나 제도변경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운용프로세스 위험	집합투자업자는 일반적으로 투자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운용프로세스를 운영합니다. 집합투자업자에게 부여된 임의재량에 의한 투자활동의 결과는 집합투자업자의 능력에 좌우되고 특히 적절한 투자기회를 식별하고 성공적으로 투자전략을 이행하는 펀드매니저의 능력에 의존합니다. 펀드매니저는 당해 투자신탁뿐만 아니라 다수의 다른 투자신탁의 운용을 담당할

	수 있고 또한 담당 펀드매니저의 퇴직 등으로 신탁계약기간 도중에 담당 펀드매니저가 변경될 위험이 있습니다.
증권대차 거래 위험	증권대차 거래가 일어나는 펀드의 경우 예탁결제원 등 시장참여자들의 관리로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으나 해당 대차증권의 미상환, 관련 담보의 부족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은 주식 및 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대부분을 투자하는 주식 고편입 상품으로 펀드수익이 주가 등락에 따라 크게 변동되며, 설정기간이 3년 이상된 펀드로서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고려하여 위험등급 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6등급 중 **1등급(매우 높은 위험)**에 해당되는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위험등급은 추후 매 결산시 마다 변동성을 재측정하게 되며 이 경우 투자위험등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주식 등에의 투자를 통한 실세금리 이상의 수익을 추구하는 반면 주식시장 하락에 따른 높은 손실위험을 감수할 수 있고 투자원본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을 잘 아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과거 3년간 일간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 97.5% VaR) : 95.96%

[시장위험 등급 기준표(97.5% VaR 모형 사용)]

등급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2등급 (높은 위험)	3등급 (다소 높은 위험)	4등급 (보통 위험)	5등급 (낮은 위험)	6등급 (매우 낮은 위험)
97.5% VaR	50% 초과	50% 이하	30% 이하	20% 이하	10% 이하	1% 이하

주1) 이 투자위험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2) 과거 3년 일간수익률에서 2.5퍼센타일에 해당하는 손실률의 절대값에 연환산 보정계수(√250)를 곱해 산출

주3) VaR(Value at Risk)는 포트폴리오 손실 위험 측정을 위해 이용되는 위험 측정수단입니다. 상기 표상 VaR값 ○○%의 의미는 펀드의 과거 3년 동안 일간수익률을 고려 시 최대 ○○%의 손실(신뢰구간 97.5%)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1)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회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판매회사에 따라 이 투자신탁의 매입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납입도 가능합니다.

(2) 종류별 가입자격

이 투자신탁의 가입 가능한 수익증권의 종류 및 자격은 가입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류		가입자격
A	수수료선취-오프라인	선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C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제한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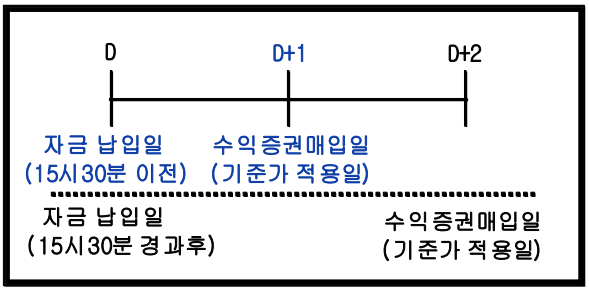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15시30분(오후 3시30분)** 이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2영업일(D+1)**에 공고되는 당해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나) **15시30분(오후 3시30분)**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당해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 다만,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신규 수익증권의 종류를 발행하는 날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날)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다)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금전등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금전등을 납입한 당일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나. 환매

구분		수수료(비용)		비고
		발생	미발생	
중도환매	허용		O	환매수수료 없음
	불가			

(1) 수익증권의 환매

수익자는 언제든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환매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환매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인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 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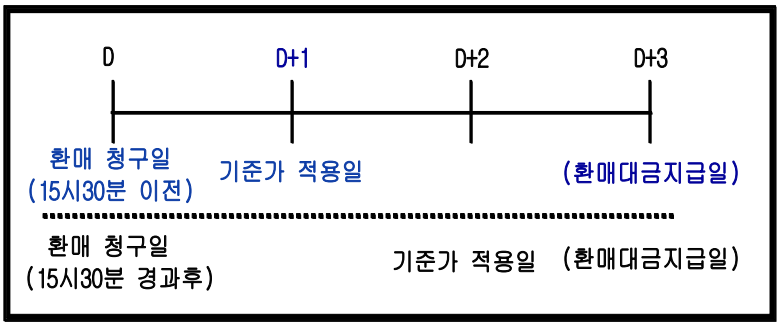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15시30분(오후 3시30분)** 이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2영업일(D+1)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D+3)**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나) **15시30분(오후 3시30분)** 경과 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D+3)**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다)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청구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한 경우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대금으로 환매에 응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소유중인 금전등으로 환매에 충분히 응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 처리합니다. 다만, 수익자의 개별적인 매입 또는 환매청구 없이 사전 약정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수익증권의 매입 또는 환매업무가 처리되는 경우에는 기준시간 이전에 매입 또는 환매청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3) 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4)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15시30분 이전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15시30분 경과 후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매입 또는 환매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 합니다.

(5)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제2영업일전일(15시30분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제2영업일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②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7)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법령과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없이 환매연기사유 및 향후 처리계획 등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환매연기사유 ※

① 투자신탁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뚜렷한 거래부진 등의 사유로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나.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의 폐쇄·휴장 또는 거래정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다.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하여 환매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나.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시가가 없어서 환매청구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다.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③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판매회사·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수익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④ 상기 ①부터 ③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8) 환매연기에 따른 수익증권의 부분환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부분환매를 결정하는 경우 환매연기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소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다. 전환 : 해당사항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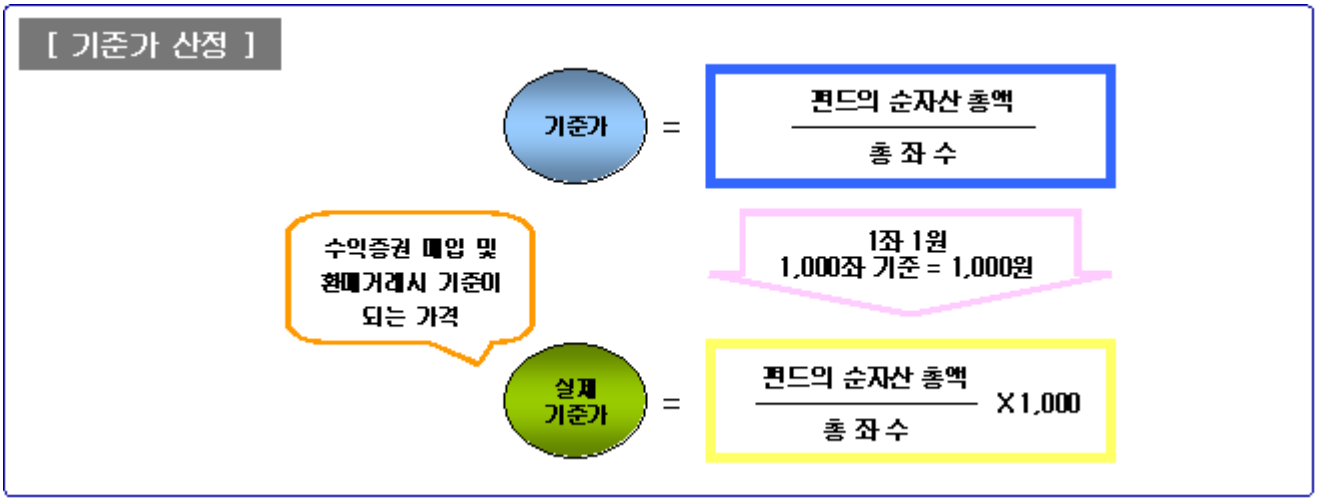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 분	내 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기준가격의 공고·게시일 전날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

	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하 "순자산총액(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그 공고·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종류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펀드간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펀드 종류간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모투자신탁의 기준가격 포함)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공시장소	[서류공시] 판매회사 영업점에서 게시 및 공시 [전자공시] 집합투자업자(www.viamc.kr)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공시 판매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공시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주1)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재산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1)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는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합니다.

(2)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법령 및 규정에 의한 방법에 따라 평가위원회(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합니다. 또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와 절차에 관한 기준(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①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의 일관성 유지에 관한 사항
③ 집합투자재산의 종류별로 해당 재산의 가격을 평가하는 채권평가회사를 두는 경우 그 선정

및 변경과 해당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의 적용에 관한 사항 등

(3) 집합투자기구에 속하는 집합투자재산은 그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대상자산	평가방법
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비상장주식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회계법인이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다만,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비상장주식은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이 취득원가보다 작은 경우에는 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하여 평가손실을 인식할 수 있음
시가형성 전의 미상장주식	구주식의 평가액. 다만, 청약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유상신주로서 신주식의 평가액이 신주발행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평가손실을 계상하지 아니함
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에 의하되, 상장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상장채무증권	상장채무증권(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에 한함)의 평가는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비상장채무증권	비상장채권(상장채무증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채권을 포함)은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장내파생상품	당해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에서 공표하는 가격(해외장내파생상품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날에 공표하는 가격)에 의함. 다만, 평가일의 공표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 공표가격에 의하여 평가
장외파생상품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 또는 장외파생상품 발행 및 계산회사가 제시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파생결합증권의 평가방법 또한 이와 같음
부도채권등	금융투자업규정 제7-35(부도채권등 부실화된 자산의 평가)에 따라 평가

주1) 평가기준일에 거래실적이 없는 등 상기 평가방법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나 세부기준은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에서 정합니다.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받고 설명 들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 분	지급비율		부과기준
	종류 A	종류 C	
	수수료선취-오프라인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0.3% 이내	-	매입 시

환매수수료	없음	환매 시
기타비용	-	발생 시

주1) 판매수수료는 매입 시점에 일회적으로 부과합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분	지급비율(순자산총액의 %, 연)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신탁업자	일반사무관리	총보수	기타비용	총보수·비용 비율	(동종유형 총 보수)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 (모투자신탁의 총 보수·비용 포함)	증권거래비용
A	0.025	0.20	0.01	0.005	0.24	0.0000	0.2400	0.86	0.2400	0.0225
C	0.025	0.40	0.01	0.005	0.44	-	0.4400	1.34	0.4400	-
지급시기	매3개월 후급					사유발생시	-		-	사유발생시

주1) 기타비용은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 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으로 예탁 및 결제비용, 회계감사비용, 채권평가보수, 펀드평가보수, 지수사용료, 보관대리인 보수, 법률자문비용, 부동산감정평가보수 등을 포함합니다.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년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회계년도 : 2025.11.01 ~ 2026.10.31]

주2) 증권거래비용은 국내자산일 경우 상장 또는 등록주식 매매수수료, 장내파생상품 매매수수료, 장외 ELW/ELS 거래수수료, 현금 중개수수료, 대차 또는 대주, Repo 거래 중개수수료 등을 포함하며, 해외자산일 경우 주식, 채권, 선물, 장외파생, 기타 Forward 매매수수료 등을 포함합니다.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년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회계년도 : 2025.11.01 ~ 2026.10.31]

구분	금액(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내역, 단위 : 천원)
증권거래비용	233

주3)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 및 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4) 금융비용은 상기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을 제외한 비용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년도의 금융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금융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회계년도 : 2025.11.01 ~ 2026.10.31]

구분	금액(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내역, 단위 : 천원)
금융비용	-

주5)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2026.09.30 기준]

※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에 대한 보수지급 ※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의 신탁업자와 이 투자신탁이 매입하는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가 다를 경우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에 편입된 해당 모투자신탁의 순자산총액 비율에 따라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신탁업자보수에서 차감되어 해당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에게 지급됩니다.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누적)>

(단위 : 1,000원)

종류			1년	2년	3년	5년	10년
A	수수료선취-오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55	80	107	165	335

	프라인	판매수수료 및 합성총보수·비용	55	80	107	165	335
C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45	92	142	247	555
		판매수수료 및 합성총보수·비용	45	92	142	247	555

주1)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판매수수료 또는 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 비용 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2) 종류 A와 C를 기준으로 총보수·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6개월이 되는 시점이나, 종류(클래스) 유형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3) 투자신탁보수는 신탁재산의 순자산가치(NAV) 변동에 따라 다소 유동적입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1)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종류형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해당 종류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합니다. 이 경우 투자자는 투자자와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및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 유보에 따른 유의사항 ※

2016년 7월 18일 이후 매년 결산.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배당 소득 등은 매년 결산.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 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 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증권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수익자가 상환금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 귀속됩니다.

나. 과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의한 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15.4%(지방소득세 포함)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소득세 14%, 주민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법인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중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하여 회계감사법인 및 감사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 간	회계감사법인	감사의견
제 20 기(2025.11.01 - 2026.10.31)	회계감사면제	해당없음
제 19기(2024.11.01 - 2025.10.31)	회계감사면제	해당없음
제 18기(2023.11.01 - 2024.10.31)	회계감사면제	해당없음

가. 요약재무정보

(단위: 원)

요약 재무상태표			
항목	제 20 기 (2026.10.31)	제 19기 (2025.10.31)	제 18기 (2024.10.31)
운용자산	994,096,313	635,201,984	367,416,949
증권	952,412,973	609,143,593	354,148,359
파생상품	0	0	0
부동산/실물자산	0	0	0
현금 및 예치금	41,683,340	26,058,391	13,268,590
기타 운용자산	0	0	0
기타자산	89,565	45,022	32,183
자산총계	994,185,878	635,247,006	367,449,132
운용부채	0	0	0
기타부채	687,888	311,367	229,994
부채총계	687,888	311,367	229,994
원본	313,388,450	312,087,229	308,449,401
수익조정금	427,460	-458,029	-314,414
이익잉여금	679,682,080	323,306,439	59,084,151
자본총계	993,497,990	634,935,639	367,219,138

요약 손익계산서			
항목	제 20 기 (2025.11.01 - 2026.10.31)	제 19기 (2024.11.01 - 2025.10.31)	제 18기 (2023.11.01 - 2024.10.31)
운용수익	366,715,359	273,357,406	43,622,524
이자수익	798,234	290,847	400,936
배당수익	0	0	0
매매/평가차익(손)	365,917,125	273,066,559	43,221,588

기타 수익	0	0	0
운용비용	2,433,455	976,807	904,046
관련회사 보수	2,433,455	976,807	904,046
매매수수료	0	0	0
기타 비용	51,615	20,610	18,894
당기순이익	364,230,289	272,359,989	42,699,584
매매회전율(%)	28.08	15.34	60.49

주1) 요약재무정보 사항 중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 동안 매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회계년도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규모가 100억원이고, 주식매도금액 또한 100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연기준)로 합니다.

주2) 기타수익에는 증권대여에 따른 수수료 수익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20기 0원, 제19기 0원, 제18기 0원 발생)

주3) 기타비용에는 증권차입에 따른 수수료 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20기 0원, 제19기 0원, 제18기 0원 발생)

주4) 상기의 요약 재무제표 및 정식 재무제표의 경우 작성 기준일은 동일하나, 상기의 요약 재무제표는 결산이 확정된 것이 아닌 결산시 이익분배금등을 감안하여 작성한 것이며, 정식 재무제표의 경우 결산 후 이익분배금을 포함한 모든 손익을 확정지어 회계감사용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계정항목이나, 합계상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주5) 요약재무제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운용펀드)를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며, 각 수익증권 종류별로 보수 및 비용 등의 차이에 따라 상이합니다.

<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 >

(단위 : 백만원, %)

구분	당기(2025.11.01 - 2026.10.31)			전기(2024.11.01 - 2025.10.31)		
	거래금액(A)	거래비용		거래금액(A)	거래비용	
		금액(B)	거래비용 비율(B/A)		금액(B)	거래비용 비율(B/A)
주식	349	0.1548	0.0443	125	0	0.0423
주식 이외의 증권 (채권 등)	88	0.0264	0.0299	73	0	0.0299
부동산	-	-	-	-	-	-
장내파생상품	588	0.0302	0.0051	306	0	0.0055
장외파생상품	-	-	-	-	-	-
기타(REPO,대차,콜 등)	500	0	0.0043	317	0	0.0034
합 계	1,526	0	0.0153	822	0	0.0125

주1)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을 자산별로 구분하였으며 장외 채권거래, 포워드(장외파생상품) 등과 같이 별도 수수료 미발생 등으로 거래비용의 객관적인 산출이 어려운 항목은 제외되었습니다.

주2) 모자형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인 경우 자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산출되었습니다.

< 주식의 매매회전율 >

(단위 : 백만원, 주, %)

주식 매수		주식 매도		당기 보유 주식의 평균가액(B)	매매회전율 (A/B)	동종유형 평균 매매회전율
수량	금액	수량	금액(A)			
982	75	2,013	270	961	28.08	32.65

주1) 동종유형은 공모집합투자기구 및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 구분하여 법 제229조에 따른 5가지 종류의 유형(단기금융집합투자기

구 제외)을 의미합니다.

주2) '동종유형 평균 매매회전율'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펀드 동종유형(주식) 평균매매회전율을 의미합니다.

주3) 모자형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인 경우 자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산출되었습니다.

나. 재무상태표

(단위: 원)

과 목	제20기(2026.10.31)		제19기(2025.10.31)		제18기(2024.10.31)	
	금 액		금 액		금 액	
자 산						
운 용 자 산						
현금및예치금		41,683,340		26,058,391		13,268,590
1. 현금및현금성자산	41,683,340		26,058,391		13,268,590	
2. 예치금						
3. 증거금						
대출채권						
1. 콜론						
2. 환매조건부채권매수						
3. 매입어음						
4. 대출금						
유가증권		952,412,973		609,143,593		354,148,359
1. 지분증권						
2. 채무증권						
3. 수익증권	952,412,973		609,143,593		354,148,359	
4. 기타유가증권						
파생상품						
1. 파생상품						
부동산과 실물자산						
1. 건물						
2. 토지						
3. 농산물						
4. 축산물						
기타운용자산						
1. 임차권						
2. 전세권						
기 타 자 산		89,565		45,022		32,183
1. 매도유가증권미수금						
2. 정산미수금						
3. 미수이자	89,565		45,022		32,183	
4. 미수배당금						
5. 기타미수입금						
6. 기타자산						
7.수익증권청약금						
자 산 총 계		994,185,878		635,247,006		367,449,132
부 채						
운 용 부 채						
1. 옵션매도						
2. 환매조건부채권매도						
기 타 부 채		687,888		311,367		229,994
1. 매수유가증권미지급금						
2. 정산미지급금						
3. 해지미지급금						
4. 수수료미지급금	687,888		311,367		229,994	
5. 기타미지급금						
6. 기타부채						
부 채 총 계		687,888		311,367		229,994
자 본						
1. 원 본	313,388,450		312,087,229		308,449,401	
2. 집합투자기구안정조정금						
3. 이월잉여금	680,109,540		322,848,410		58,769,737	
(발행좌수 당기: 313,388,450 좌	이익잉여금	679,682,080		323,306,439		59,084,151
전기: 312,087,229 좌	수익조정금	427,460		-458,029		-314,414
전전기: 308,449,401 좌)						
(기준가격 당기: 4,046.38 원						
전기: 2,595.93 원						
전전기: 1,502.45 원)						
자 본 총 계		993,497,990		634,935,639		367,219,138
부 채 와 자 본 총 계		994,185,878		635,247,006		367,449,132

다. 손익계산서

(단위: 원)

과 목	제20기(2025.11.01-2026.10.31) 금 액		제19기(2024.11.01-2025.10.31) 금 액		제18기(2023.11.01-2024.10.31) 금 액	
운 용 수 익						
1. 투자수익		798,234		290,847		400,936
1. 이 자 수 익	798,234		290,847		400,936	
2. 배당금수익						
3. 수수료수익						
4. 임대료수익						
2. 매매차익과 평가차익		365,917,125		273,195,666		43,221,588
1. 지분증권매매차익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익						
3. 파생상품매매/평가차익						
4. 지분증권평가차익	321,848,260		256,085,543		35,159,624	
5. 외환거래/평가차익						
6. 현금및대출채권매매/평가차익						
7. 기타거래차익	44,068,865		17,110,123		8,061,964	
3. 매매차손과 평가차손				129,107		
1. 지분증권매매차손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손						
3. 파생상품매매/평가차손						
4. 지분증권평가차손						
5. 외환거래/평가차손						
6. 대손상각비						
7. 현금및대출채권매매차손						
8. 기타거래손실			129,107			
운 용 비 용		2,485,070		997,417		922,940
1. 운용수수료	258,753		103,788		95,563	
2. 판매수수료	2,071,303		831,614		770,515	
3. 수탁수수료	103,399		41,405		37,968	
4. 투자자문수수료						
5. 임대자산관련비용						
6. 기타비용	51,615		20,610		18,894	
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		364,230,289		272,359,989		42,699,584
좌당순이익(또는 좌당순손실)		1.162232651		0.872704692		0.138433026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단위: 억좌, 억원)

종류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설정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환매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A	수수료선취-오프라인	2025.11.01 - 2026.10.31	3	6	0	0	0	0	3	10
		2024.11.01 - 2025.10.31	3	4	0	0	0	0	3	6
		2023.11.01 - 2024.10.31	3	3	0	0	0	0	3	4
C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2024.11.01 - 2025.10.31	0	0	0	0	0	0	0	0
		2023.11.01 - 2024.10.31	0	0	0	0	0	0	0	0

주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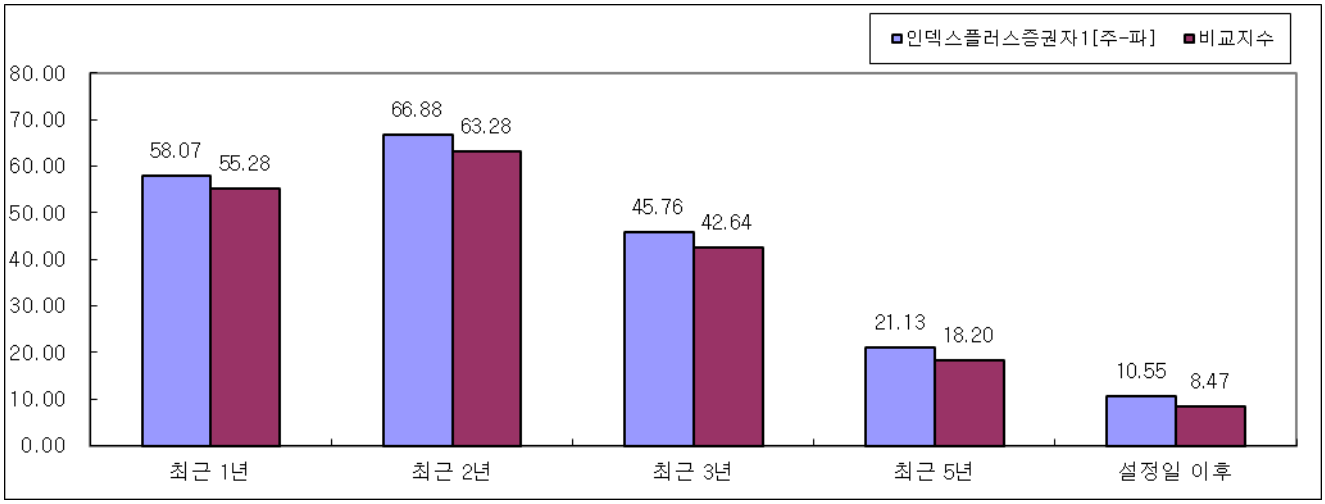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 변동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수익률은 투자신탁의 기간에 따른 운용 실적으로 투자자의 투자시기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의 투자실적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가. 연평균 수익률 (세전기준)

(단위 : %)

종류		최근1년	최근2년	최근3년	최근5년	설정일 이후
		25.11.02 ~ 26.11.01	24.11.02 ~ 26.11.01	23.11.02 ~ 26.11.01	21.11.02 ~ 26.11.01	06.11.01 ~ 26.11.01
운용펀드		58.07	66.88	45.76	21.13	10.55
비교지수		55.28	63.28	42.64	18.20	8.47
수익률변동성		46.51	35.62	30.72	25.91	21.80
A	수수료선취-오프라인	57.70	66.50	45.42	20.76	9.78



주1) 비교지수 : KOSPI200 100%

주2) 연평균 수익률 추이는 과세전의 수익률이며,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3) 수익률 변동성(%)은 해당 기간 동안 집합투자기구의 연환산된 주간수익률의 표준편차를 나타냅니다.

주4) 종류형 투자신탁의 경우 연평균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운용펀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운용펀드)의 수익률에는 집합투자업자보수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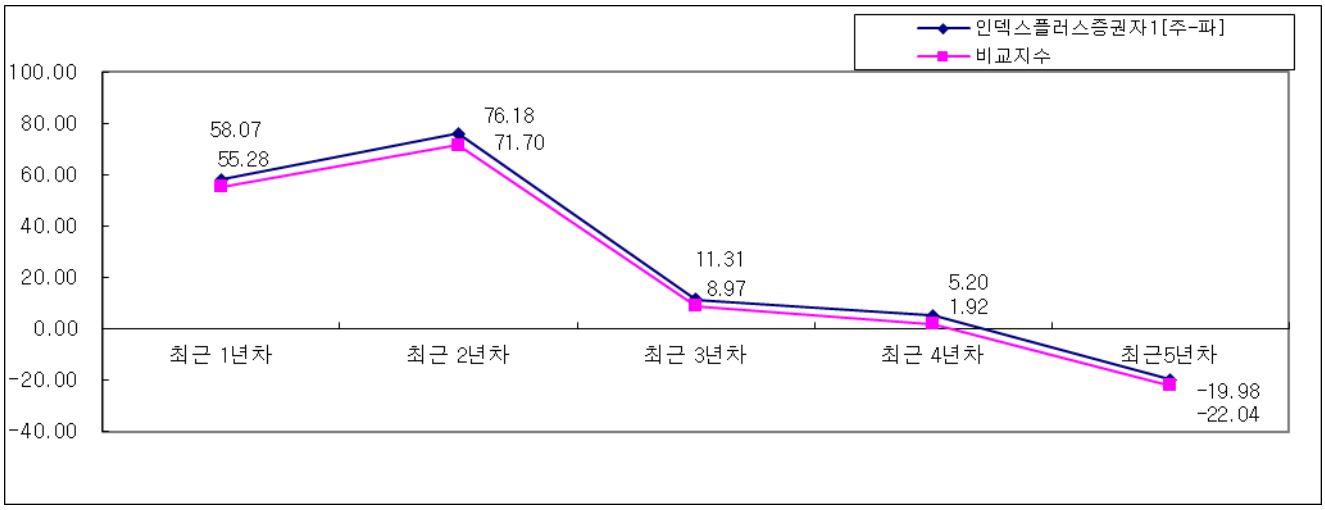
주5)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으로 각 종류(클래스)별 설정일이 다르기 때문에 '설정일 이후' 수익률은 각 종류별 설정일 이후의 수익률을 의미합니다. 또한, 상기 기준일에 미설정 또는 전부해지된 종류의 수익률은 표기되지 않으며, 전부해지 후 재설정된 종류의 경우에는 재설정일 이후의 수익률이 표기됩니다.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

(단위 : %)

종류	최근1년차	최근2년차	최근3년차	최근4년차	최근5년차

		25.11.02 ~ 26.11.01	24.11.02 ~ 25.11.01	23.11.02 ~ 24.11.01	22.11.02 ~ 23.11.01	21.11.02 ~ 22.11.01
운용펀드		58.07	76.18	11.31	5.20	-19.98
비교지수		55.28	71.70	8.97	1.92	-22.04
A	수수료선취-오프라인	57.70	75.79	11.04	4.95	-20.45



주1) 비교지수 : KOSPI200 100%

주2) 연도별 수익률 추이는 과세전의 수익률이며,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3)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수익률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주4)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미만인 경우(예: 8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상품(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인 '기간 수익률'을 말합니다.

주5)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미만인 경우(예: 8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상품(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을 연간 수익률로 환산한 '연환산 수익률'을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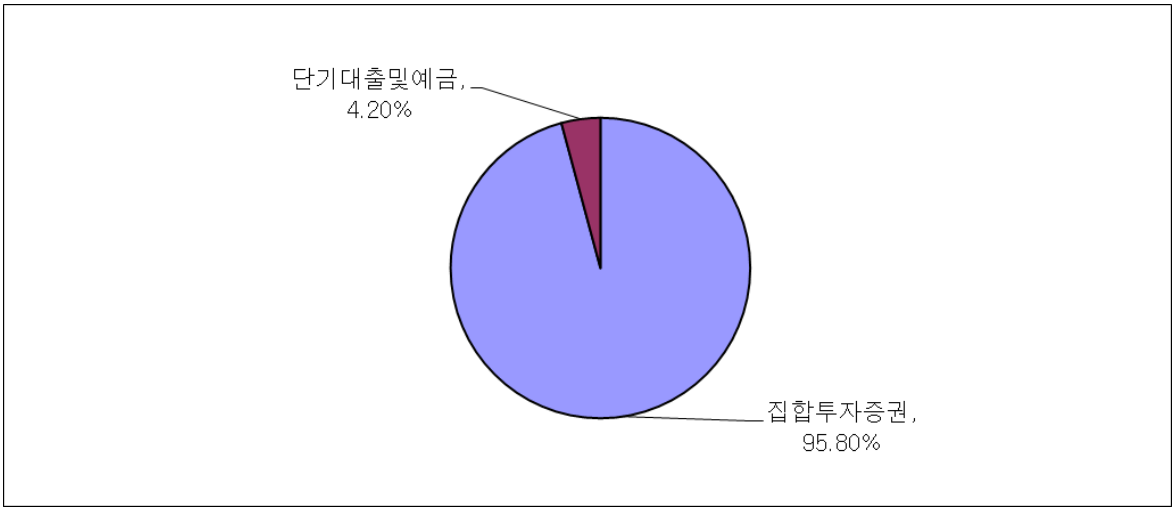
주6) 종류형 투자신탁의 경우 연도별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운용펀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운용펀드)의 수익률에는 집합투자업자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구성 현황

(펀드분기말 2026.10.31 기준 / 억원, %)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 투자증권	장내	장외		실물 자산	기타			
원화	0	0	0	10	0	0	0	0	0	0	0	10
	(0.00)	(0.00)	(0.00)	(95.80)	(0.00)	(0.00)	(0.00)	(0.00)	(0.00)	(4.20)	(0.00)	(100.00)
합계	0	0	0	10	0	0	0	0	0	0	0	10
	(0.00)	(0.00)	(0.00)	(95.80)	(0.00)	(0.00)	(0.00)	(0.00)	(0.00)	(4.20)	(0.00)	(100.00)

주1) ( )는 투자신탁 자산총액 대비 비중을 나타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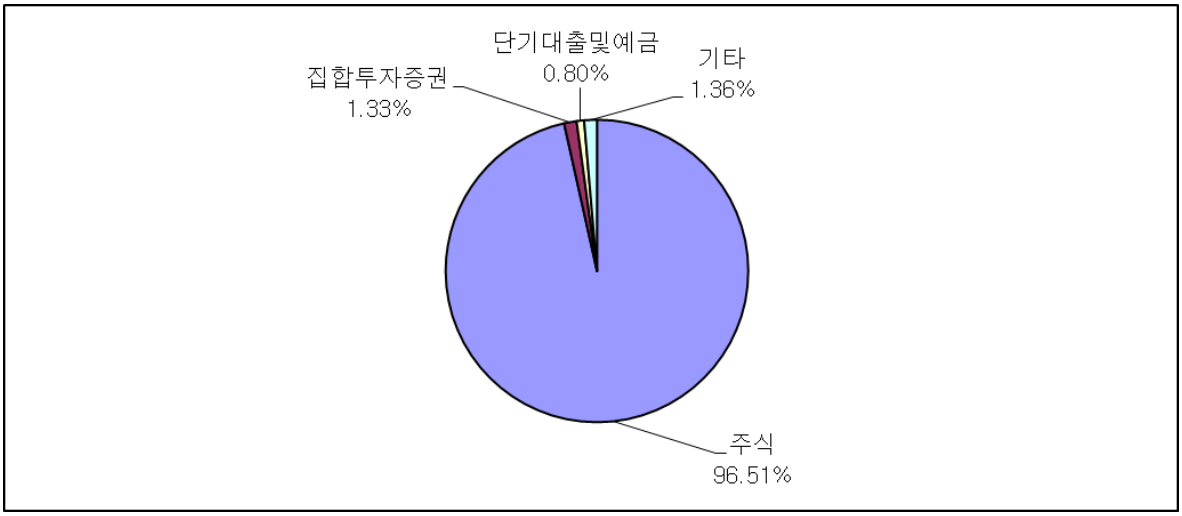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 자산 형현황]

※ 브이아이 투게더 인덱스 증권 모투자신탁[주식-파생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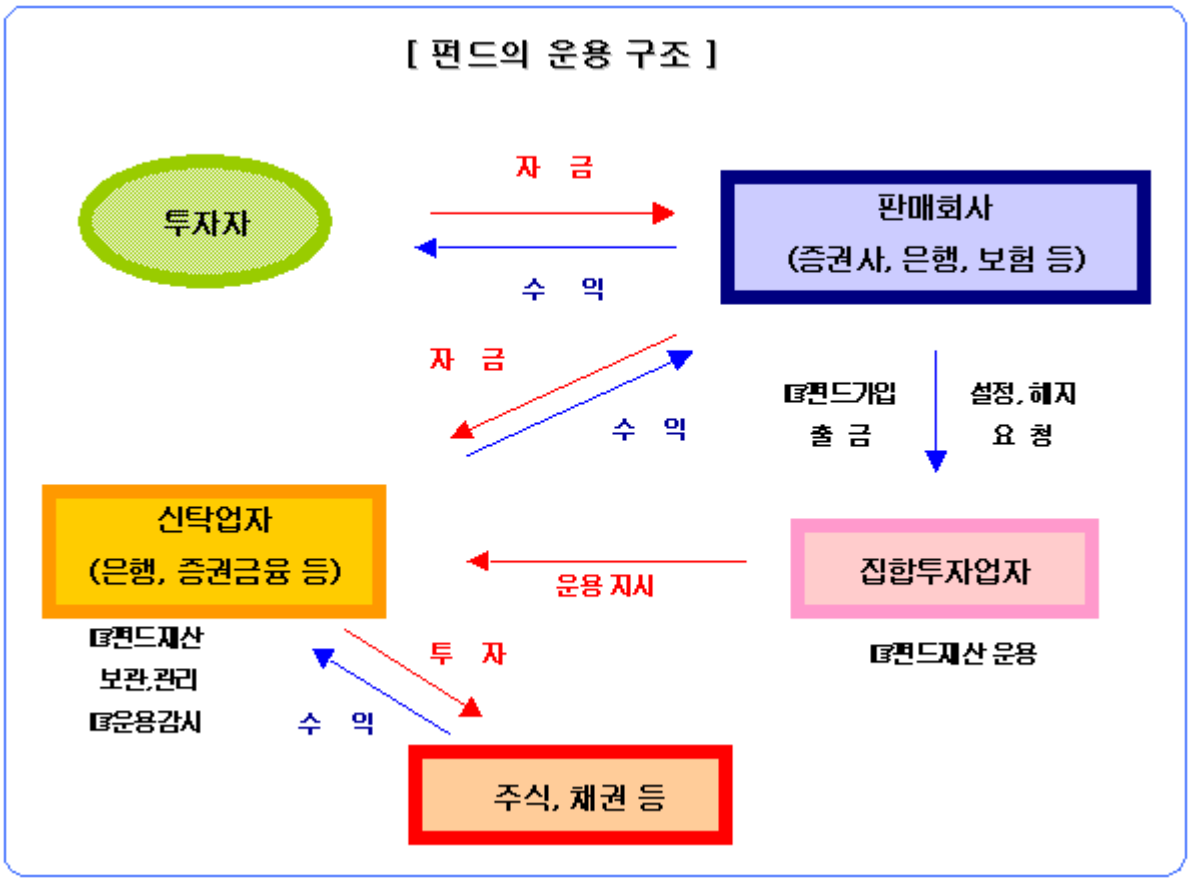
(펀드분기말 2026.10.31 기준 / 억원, %)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 투자 증권	장내	장외		실물 자산	기타			
원화	87	0	0	1	0	0	0	0	0	1	1	90
	(96.51)	(0.00)	(0.00)	(1.33)	(0.00)	(0.00)	(0.00)	(0.00)	(0.00)	(0.80)	(1.36)	(100.00)
합계	87	0	0	1	0	0	0	0	0	1	1	90
	(96.51)	(0.00)	(0.00)	(1.33)	(0.00)	(0.00)	(0.00)	(0.00)	(0.00)	(0.80)	(1.36)	(100.00)

주1) ( )내는 투자신탁 자산총액 대비 비중을 나타냅니다.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

회 사 명	브이아이자산운용㈜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서울국제금융센터 Three IFC 16층)
연 락 처	02-727-2700
홈페이지	www.viamc.kr
연 혁	1989. 10 제일투자신탁 설립 1999. 2 제일투자신탁운용 설립 1999. 4 제일투자신탁운용 영업개시 2000. 5 투자자문업 인가 2004. 9 CJ자산운용으로 상호변경 2008. 9. 하이자산운용으로 상호변경 **2020. 1. 브이아이자산운용으로 상호변경**
자 본 금	344억
주주현황	VI Capital Pte. Limited 99.99%, 기타 0.01%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운용지시업무를 수행합니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기준가격의 산정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하며, 위탁에 따른 수수료는 동 투자신탁에서 부담합니다.

(2) 선관의무 등

①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투자신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②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의 계산으로 행한 법률행위로부터 발행한 제비용 및 보수를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할 수 있습니다.

③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자신의 채무를 수익자의 명의로 부담하게 하거나 투자신탁재산으로 이를 변제할 수 없습니다.

④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채권은 그 집합투자업자의 당해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3) 책임

①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신탁계약 및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② 집합투자업자가 ①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법령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이 법령 및 신탁계약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이를 판매회사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4)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5) 업무의 위탁

집합투자업자는 기준가격계산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 통보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영업소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기준가격계산업무 등과 관련한 용역제공의 대가로 보수를 받게 되며, 그 보수는 집합투자재산이 부담하게 됩니다.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회사는 기준가격계산업무를 **신한펀드파트너스㈜**에 위탁하였습니다. 업무의 위탁에 대한 책임은 업무를 위탁한 집합투자업자에 있습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연결재무내용

(단위 : 백만원)

요약 연결재무상태표			요약 연결손익계산서		
계정과목	2025.12.31	2024.12.31	계정과목	2025.1.1 ~ 2025.12.31	2024.1.1 ~ 2024.12.31

현금및현금성자산	10,603	27,724	영업수익	86,638	50,960
기타금융자산	-	-			
FVPL-금융자산	99,930	50,597	영업비용	77,859	43,625
FVOCI-금융자산	1,733	1,217			
대여금및수취채권	22,696	10,675	**영업이익**	**8,779**	**7,335**
종속기업및관계기업	1,392	1,402			
유형자산	1,074	1,967			
무형자산	629	1,029	영업외수익	21	379
기타자산	352	768	영업외비용	430	194
이연법인세자산	-	588	**법인세비용 차감전순이익**	**8,370**	**7,520**
자산총계	**138,408**	**95,967**	법인세비용	1,901	1,633
FVPL-금융부채	-	68			
기타부채	61,809	25,889	**당기순이익**	**6,469**	**5,887**
당기법인세부채	-	751			
이연법인세부채	891	-			
퇴직급여채무	28	74			
부채총계	**62,728**	**26,782**	지배주주지분순이익	6,469	5,887
자본금	34,408	34,408	비지배지분순이익	-	-
자본잉여금	2,327	2,327	기타포괄손익	50	579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117	409	**당기총포괄손익**	**6,519**	**6,466**
이익잉여금	37,828	32,040			
비지배지분	-	-	지배주주지분포괄이익	6,519	6,466
자본총계	**75,680**	**69,184**	비지배지분포괄이익	-	-

라. 운용자산 규모

(2026.10.31 현재 / 억원)

집합투자기구	증권					부동산/부동산파생	특별자산/특별자산파생	혼합자산/혼합자산파생	MMF	총 계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파생형	재간접형					
수탁고	7,836	2,143	46,511	5,160	4,726	5,359	5,821	9,714	57,276	144,547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 업무 수탁회사 : 해당사항 없음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 해당사항 없음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가.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하나은행
주 소	서울시 중구 을지로 35
연 락 처	1599-1111
홈페이지	http://www.hanabank.com/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①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②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③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④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⑤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 수익금, 임대료 등의 수령
⑥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⑦ 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⑧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⑨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2) 의무 및 책임

(가) 의무

①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신탁계약, 투자설명서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③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 투자설명서가 법령 ·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의 여부
-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의 여부
-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기준가격 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
-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 투자신탁 재산별 자산배분내역 및 배분 결과
-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시행령 제269조제4항에서 정하는 사항

(나) 책임

신탁업자가 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탁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신한펀드파트너스㈜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28
연 락 처	02) 2180-0400
회사연혁 등 (홈페이지 참조)	2000. 6 법인설립 2008. 5 신한은행 자회사로 편입 www.shinhanfundpartners.com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기준가격 계산에 관한 업무 및 보수인출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2) 의무 및 책임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집합투자업자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수익자에게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5.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회사명	한국자산평가	KIS자산평가	NICE피앤아이	에프앤자산평가	이지자산평가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88 ☎ 02-2251-1300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 02-3215-1400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9 ☎ 02-398-3900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2로 61 ☎ 02-721-5300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 ☎ 02-785-1410
회사연혁 등 (홈페이지)	설립일 : 2000.5.29 (www.koreaap.com)	설립일 : 2000.6.20 (www.bond.co.kr)	설립일 : 2000.6.15 (www.nicepni.com)	설립일 : 2011. 6.9 (www.fnpricing.com)	설립일 : 2020.6.19 (www.egap.co.kr)

나. 주요업무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 평가 및 이를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익자총회 등

(1) 수익자총회의 구성

①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② 수익자총회는 법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③ 종류형 집합투자신탁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 수익자에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가) 수익자총회의 소집

①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그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②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하며, 전자등록기관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③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가 개최되고,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목적이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와 동일한 시간 및 장소에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나)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②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봅니다.

- 수익자에게 법시행령 제221조제6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

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시행령 제221조제7항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③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④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다) 연기수익자총회

①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수익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② 수익자총회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합니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③ 연기수익자총회에서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①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그 밖에 법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제외)

②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③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집합투자업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신탁을 흡수하는 방법으로 투자신탁을 합병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 제19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시행령 제225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4) 반대매수청구권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①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193조제2항에 따

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②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법시행령 제222조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한다) 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됩니다.

투자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집합투자재산 명세서 /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①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③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

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 해당 증권의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

마.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5호에 따른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① 이 상품의 신탁계약서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①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②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③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④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⑤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나.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①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②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③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 경과시점에서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④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상기 ③ 및 ④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합니다.
- 상기 ③ 및 ④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개월 이내에 해지, 합병 및 모자형 전환,

존속 등 처리계획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가) 영업보고서

① 집합투자업자는 법시행령 제94조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출자금 변동상황
-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표
- 법 제87조제8항제1호·제2호에 따라 의결권의 행사내용 및 그 사유가 기재된 서류
-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법 제88조제2항제4호에 따른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수수료와 그 비중

(나)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작성하여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고, 이 결산서류는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②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③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2) 자산운용보고서

(가)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부터 매3개월마다 법 제88조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나)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①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부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② 직전의 기준일(직전의 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최초 설정일 또는 성립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사항

③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④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법시행령 제92조제2항에서 정하는 매매회전율

⑤ 그 밖에 법시행령 제92조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

(다)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①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② 집합투자업자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③ 집합투자업자가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법 제230조제3항에 따라 그 집합투자증권이 상장된 경우만 해당)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④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이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해지 또는 해산 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하지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자산운용보고서와 같이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①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

②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③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④ 법 제247조제5항 각호의 사항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①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②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법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③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제외)
④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⑤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⑤-2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⑥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⑦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⑧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⑨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수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하는 사항이 발행한 경우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www.viamc.kr)・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판매회사를 통해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①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②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
③ 법 시행령 제93조제2항에서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④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⑤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외
⑥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⑦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⑧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합니다)로서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임의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⑨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임의해지 될 수 있다는 사실

⑩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부동산·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법시행령 제2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나.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 다만,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

다. 지상권·지역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및 사업수익권·시설관리운영권 등 특별자산 관련 중요한 권리의 발생·변경

라. 금전의 차입 또는 금전의 대여

⑪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합니다.

①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②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③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①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법 제87조제7항에 따른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인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 시장을 통하여 공시할 것

②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시공시 방법 등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4) 위험지표의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법 제81조제1항제1호마목의 위험평가액을 말한다)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을 파생상품에 운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각의 위험에 관한 지표를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www.viamc.kr)에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험에 관한 지표	산정·작성 방법	공시시기
계약금액	파생상품거래의 유형별로 매수, 매도 및 순포지션(매수-매도)으로 나누어 금융투자업규정 제4-54조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된 명목계약금액의 총액을 기재	파생상품 거래 후 그 다음날까지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만기시점의 손익구조	당해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이 발생하는 구간과 손익이 없는 구간 및 손실이 발생하는 구간으로 구분하여 투자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도표 등으로 나타내고 이를 서술식으로	파생상품 거래 후 그 다음날까지

	요약하여 기재	
시장상황의 변동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손익구조의 변동	시나리오법에 따라 산정	매일 공시
일정한 보유기간에 일정한 신뢰구간 범위 안에서 시장가격이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불리하게 변동될 경우에 파생상품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손실예상금액(VaR)	최대 손실예상금액(VaR)은 보유 포지션의 시장가치 X 신뢰구간에 따른 표준 편차의 배수 X 포지션의 변동성(표준편차) X $\sqrt{\text{보유기간}}$ 으로 산정	매일 공시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되는 지표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위험에 관한 지표		

주1) 위험에 관한 지표 산출을 위한 자료가 부족하여 지표의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파생상품의 경우에는 시장상황의 변동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손익구조의 변동 또는 일정한 보유기간에 일정한 신뢰구간 범위에서 시장가격이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불리하게 변동될 경우에 파생상품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손실예상금액(VaR)을 공시하지 아니합니다.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단위:백만원)

이해관계인				
성명(상호)	관계	거래의 종류	자산의 분류	거래금액
해당사항 없음				

[이해관계인의 범위]

집합투자업자의 임직원과 그 배우자 /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와 그 배우자 /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 계열회사의 임직원과 그 배우자 /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100분의 30이상 판매·위탁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30이상을 보관·관리하고 있는 신탁업자 / 집합투자업자가 법인이사인 투자회사의 감독이사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

구 분	선 정 기 준
선정원칙	회사는 중개회사를 선정함에 있어 투자자에게 최대한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① 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중개수수료)이나 수익 ② 거래 유형(예: 상장주식블록매매, 차익거래매매, 파생상품매매, 채권매매 등)에

	따른 매매체결 능력 ③ 중개회사의 재무상황, 규모 등 발생 가능한 리스크
평가항목	1. 채무증권 및 채무증권관련 장내파생상품의 중개회사 및 통화관련 장내파생 상품의 중개회사 ① 재무건전성 ② 정보제공정도 및 수준(운용지원 및 세미나 개최 등 포함) ③ 결제이행능력(매매업무의 신속, 정확성 등) 2. 상장지분증권 및 상장지분증권 관련 장내파생상품의 중개회사 ① 정보제공 정도 및 수준(기업분석 자료 및 운용지원) ② 기업방문 및 NDR 협조 ③ 운용관련 세미나 ④ 요청자료 협조(운용에 필요한 자료요청 등) ⑤ 결제이행 능력(매매업무의 신속, 정확성 등)

주1) 시장상황의 급변이나 운용상 필요한 경우에는 상기 평가항목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 해당사항 없음

[참고] 펀드용어의 정리

용어 (가나다순)	내 용
개방형(집합투자기구)	투자자가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한 펀드입니다.
기업공개	주식의 대중화와 기업재무 내용의 공시를 통해서 명실상부한 주식회사 체제를 갖추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개인이나 소주주로 구성되어 폐쇄성을 띠고 있는 주식회사가 그 주식을 법정절차와 방법에 따라 균일한 조건으로 일반 대중에게 매출 또는 모집한 후 증권거래소에 상장시킴으로써, 회사의 재산상태와 영업활동의 결과 및 주요계약 등을 이해관계자에게 공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매입·환매 및 분배시 적용되는 가격으로, 기준가격은 공고일 전일의 펀드 순자산총액을 그 공고일 전일의 펀드 수익증권 총수량으로 나누어 1,000을 곱한 가격으로 계산하고,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모자형(집합투자기구)	운용하는 펀드(모펀드)와 이 펀드에만 투자하는 펀드(자펀드)로 구성된 펀드형태를 말합니다.
레버리지효과	차입이나 파생상품 등을 활용하여 투자원본보다 더 많이 투자함으로써 투자성과의 크기를 극대화하는 효과를 말합니다. 적은 투자금액으로 큰 수익을 얻을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예상이 빗나갈 경우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설정	펀드에 자금이 납입되는 것을 말하며, 신규설정과 추가설정이 있습니다.
수익자총회	법령 및 신탁계약상의 중요사항을 변경 할 때 펀드의 모든 투자자들이 모여 의사결정을 하는 기구를 말합니다. 그 방법 및 절차는 법령 및 해당 신탁계약에 따릅니다.
수탁고	펀드에 유치된 자금의 양, 즉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들의 자금을 맡아 운용하는 규모를 말합니다.
투자신탁보수	펀드의 운용 및 관리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즉 재산을 운용 및 관리해준 대가로 투자자가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통상 연 %로 표시되며, 투자신탁보수에는 집합투자업자보수, 판매회사보수, 신탁업자보수,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등이 있습니다. 보수율은 펀드마다 다르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선취판매수수료	펀드 가입시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신탁업자	펀드재산을 보관·관리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실물자산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광산물, 에너지 등에 속하는 물품 및 이 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등을 의미합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판매회사)가 그 지급받는 자(투자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산유동화증권	기업의 부동산을 비롯한 여러 가지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합니다.
종류형(집합투자기구)	통상 멀티클래스펀드라 하며, 하나의 펀드 안에서 투자자그룹(클래스)별로 서로 다른 판매보수와 수수료 체계를 적용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펀드재산의 50%를 초과하여 증권(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집합투자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등을 금융투자상품 등에 투자하여 그 운용성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집합투자기구	통상 펀드라고 말하며, 대표적으로 투자신탁과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집합투자업자	펀드를 운용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집합투자증권	펀드에 대한 출자지분이 표시된 것으로서 투자신탁의 경우 수익증권을 말합니다.
추가형(집합투자기구)	이미 설정된 펀드에 추가로 자금납입이 가능한 펀드입니다.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투자회사	설립자본금을 바탕으로 주식회사 형태로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투자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펀드에 부여하는 5자리의 고유코드를 말합니다.
해지	펀드의 신탁계약기간 종료 등의 사유로, 펀드의 자산을 모두 처분하여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나눠주는 것을 말합니다.
환매	만기가 되기 전에 맡긴 돈을 되찾아 가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단위형(폐쇄형)펀드의 경우 일정기간동안 중도환매를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매수수료	펀드에 가입한 후 일정기간 이내에 환매할 때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수수료로서 부과된 환매수수료는 다시 펀드재산에 편입됩니다.
환매조건부매도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다시 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것을 말합니다.